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188

발의연월일: 2022. 11. 9.

발 의 자:이채익・구자근・김성원

김승수 · 김영선 · 백종헌

윤영석 • 이인선 • 정동만

조명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제정 취지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나,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 '예술인'을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예술 현장에서는 예술 활동 증명 제도를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제도로 오인하고 있는 한편, 예술 활동을 증명하지 않은 사람은 일반적인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음.

이에, 본 제도의 운영 목적인 예술인의 예술활동 실적 등을 확인하여 예술인 복지정책 대상을 선별하는 절차임을 감안하여 '예술 활동 증명에 대한 사항'을 '예술 활동 확인에 대한 사항'으로 전부 변경하면서(이하 현행 '예술활동증명'을 '예술활동확인'으로 함), 예술인의 정의에서 예술 활동 확인 사항을 삭제하여 예술 활동을 확인하지 않은 사람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예술 활동을 확인한 사람을

'예술 활동 확인 예술인'으로 규정함으로써, 일반적인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에 더하여 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각종 복지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안 제2조제2의2호·제10 조제3항 신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예술인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는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예술인 복지업무와 관련된 예술인 개인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 복지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5 신설).

한편, 현행법에서는 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지 아니하도록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로 예술인의 경력정보 관리 등을 위한 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정보 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아울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불공정행위'는 삭제되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대상 등을확대하여 규정함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상담 및 법률적 지원을 추가하여 실효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8호).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을 "창작"으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예술 활동 확인 예술인"(이하 "활동 확인 예술인"이라 한다) 이란 제2호의 사람 중 제4조의5에 따른 예술 활동을 확인한 사람 을 말한다.

제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5(예술 활동의 확인 및 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계적인 예술인 복지 지원을 위하여 예술인의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확인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술활동의 확인에 대한 업무를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예술활동의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한국예술복지재단과 예술인 복지 업무 관련 기관·법인·단체 에 예술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활동 확인 예술인의 예술 활동 활성화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예술인 복지업무와 관련된 기관·법인·단체는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의 확인에 대한 사항, 제4항에 따른 활동 확인 예술인의 예술 활동 활성화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과 관련된 예술인 개인정보를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의 확인에 관한 기준, 절차와 제4항에 따른 활동 확인 예술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예술 인 복지업무와 관련된 기관·법인·단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을 위하여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제8호 중 "불공정행위"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제4조의5제4항에 의한 활동 확인 예술인의 예술활동 활성화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별도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 활동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받은 사람은 제4조의5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활동 확인 예술인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2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	
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	
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	
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	
야에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창작</u>
<u>바에 따라 창작</u> ,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u>활동을 증명할</u>	<u>활동을 하는</u>
<u>수 있는 사람</u> 을 말한다.	<u>사람</u>
<u> <신 설></u>	2의2. "예술 활동 확인 예술인"
	(이하 "활동 확인 예술인"이
	라 한다)이란 제2호의 사람
	중 제4조의5에 따른 예술 활
	동을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3. • 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u> <신 설></u>	제4조의5(예술 활동의 확인 및
	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은 체계적인 예술인 복지 지
	원을 위하여 예술인의 창작, 실
	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확인

-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예술활동의 확인에 대한 업무를 제8조에 따른 한 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예술활동의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2항 및 제5 항에 따른 한국예술복지재단과 예술인 복지 업무 관련 기관· 법인·단체에 예술활동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활동 확인 예술인의 예술 활동 활성 화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 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 지재단과 예술인 복지업무와 관련된 기관·법인·단체는 제 1항에 따른 예술 활동의 확인 대한 사항, 제4항에 따른 활동 확인 예술인의 예술 활동 활성 화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과 관련된 예술인 개인정보를

제6조(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제6조(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생 략)

<신 설>

<신 설>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 호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의 확인에 관한 기준, 절차와 제4 항에 따른 활동 확인 예술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 에 따른 예술인 복지업무와 관 련된 기관 · 법인 · 단체의 범위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한 조치 마련)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항의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을 위하여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 체의 장 및 관련 기관 · 단체의 장에게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 • 이용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 7. (생 략)
- 담 및 법률적 지원
- 9. ~ 12. (생 략)
- ② (생략)
- <신 설>

- 1. ~ 7. (현행과 같음)
- 8.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 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0호 각 목에 따른 예술인권리 <u>침해행위</u>-----
 - 9. ~ 12.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③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제4조의5제4항에 의한 활동 확인 예술인의 예술활동 활성화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별도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